

2019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경 찰 청 장

I 채용 분야 및 인원 [11개 분야 총 372명 선발]

| 분야 | 번호사 | 공인 회계사 | 교통 공학 | 무도 | 과학 수사 | 교향 악단 | 재 난 사고 | 사이버수사 | 사이버보안수사 (통합선발) | 경찰 행정학 | 법학 경채 | 세무 회계 |
|------------|---------|--------|---------|---------|---------|---------|---------|---------|----------------|---------|---------|-------|
| 계급 (인원372) | 경감 (20) | 경위 (5) | 순경 (40) | 순경 (25) | 순경 (22) | 순경 (13) | 순경 (10) | 경장 (79) | 순경 (108) | 순경 (30) | 순경 (20) | |

| 채용분야 | 계급(인원) | 지방청별 채용예정인원(명) | | | | | | | | | | | | | | | | 비고 | |
|----------------------|-------------------|---|----|----|----|----|----|----|------|------|----|----|----|----|----|----|----|--------------|----|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제주 |
| 번호사 | 경감(20) | 본청 20 | | | | | | | | | | | | | | | | 본청 선발 (135명) | |
| 공인회계사 | 경위(5) | | 1 | | 1 | 1 | 1 | | 1 | | | | | | | | | | |
| 교통공학 | 순경(40) | 3 | 1 | 3 | 3 | 1 | 2 | 1 | 5 | 3 | 2 | 3 | 2 | 2 | 2 | 3 | 3 | | 1 |
| 무도 <순경(25)> | 무도경채(5) | 태권도 3, 유도·검도 각 1 | | | | | | | | | | | | | | | | | |
|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20) | 태권도 6, 유도·복싱·레슬링·사격 각 3, 검도 2 | | | | | | | | | | | | | | | | | |
| 과학수사 <순경(22)> | 일반과수(17) | 4 | 1 | | 1 | | | | 3 | 1 | | 1 | 1 | | 1 | 1 | 2 | | 1 |
| | 화재안전(5) | | 1 | 1 | | 1 | | | | | 1 | | | 1 | | | | | |
| 교향악단 | 순경(13) | 바이올린 3, 첼로 2, 비올라·콘트라베이스·오보에·바순·트럼펫·베이스·트럼본·실용피아노·베이스기타 각 1 | | | | | | | | | | | | | | | | | |
| 재난사고 <순경(10)> | 건축(2) | | | | 1 | 1 | | | | | | | | | | | | | |
| | 토목(2) | | | | | | 1 | 1 | | | | | | | | | | | |
| | 기계(3) | 1 | | | | | | 1 | | | | | | | | | 1 | | |
| | 전기(3) | | 1 | | | | | | 1 | | | | | | 1 | | | | |
| 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수사 (통합선발) | 경장(79) | 10 | 10 | 5 | 3 | 2 | 2 | 3 | 8 | 5 | 4 | 6 | 3 | 3 | 3 | 5 | 4 | 3 | |
| 경찰 행정학과 | 순경(108) | 25 | 4 | 4 | 7 | 4 | 5 | 3 | 18 | 7 | 3 | 3 | 5 | 4 | 4 | 3 | 6 | 3 | |
| 법학 | 순경(30) | 6 | 2 | 2 | 2 | 1 | 1 | 1 | 5 | 1 | 1 | 1 | 1 | 1 | 1 | 1 | 2 | 1 | |
| 세무회계 | 순경(20) | 3 | 2 | 1 | 2 | 1 | 1 | | 3 | 1 | | 1 | 1 | | 1 | 1 | 1 | 1 | |

※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II 시험 절차 및 일정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 절차 | 시험 분야 | 시험 일정 | | | |
|-------|-------|--|-------|-------|--------|
| | | 시험 종류 | 시험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 발표 |
| 원서접수 | 全 분야 | '19. 7. 12.(금) 09:00 ~ 22.(월) 18:00 <11일간> | | | |

| 1차시험 | 번호사 공인회계사 무도경채 | 서류전형 | 7. 12.(금) 원서접수 사이트 | 8. 12.(월)~16.(금) | 8. 23.(금) 17:00 |
|------|------------------------------|--------------------------------------|-----------------------|----------------------------|------------------------------|
| | 교통공학 무도경채 과학수사 재난사고 교향악단 | 실기시험 | 8. 23.(금) 원서접수 사이트 | 9. 2.(월)~25.(수) | 9. 27.(금) 17:00 |
| | 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수사 (통합선발) 법학 세무회계 | 필기시험 ※ (출제) 경찰청 주관 (진행) 지방청 주관 | 8. 2.(금) 응시한 지방청 홈페이지 | 8. 10.(토) 10:00~ (과목당 20분) | 8. 14.(수) 17:00 |
| | | | 경찰행정학과 | 8. 23.(금) 응시한 지방청 홈페이지 | 8. 31.(토) 10:00~11:40 (100분) |

| 2차시험 | 본청 선발 분야 | 신체·체력·적성검사 | 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 10. 1.(화)~11.(금) | 현장에서 합격여부 판단 |
|------|-----------|------------|--------------|------------------|--------------|
| | 지방청 선발 분야 | | | 9. 9.(월)~27.(금) | |

| 3차시험 | 본청 선발 분야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없음 | 11. 4.(월)~7.(목) | 11. 8.(금) |
|------|-----------|-----------|------|-------------------|-----------|
| | 지방청 선발 분야 | | | 10. 14.(월)~18.(금) | |

| 4차시험 | 본청 선발 분야 | 면접시험 | 11. 8.(금) | 11. 13.(수)~27.(수) | 11. 29.(금) 17:00 (최종발표) |
|------|-----------|------|------------|-------------------|-------------------------|
| | 지방청 선발 분야 | | 10. 18.(금) | |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공지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는 원서접수부터 3차 시험까지 별도 진행(시험일정 추후 공지)

Ⅲ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12.(금) 09:00 ~ 22.(월) 18:00 <11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 **접수 취소 및 응시표 출력 기간**

| 채용 분야 | 접수 취소 기간 | 응시표 출력 기간 |
|------------------------|-------------------------------|-------------------|
| 경찰행정학과 | 7. 31.(수) ~ 8. 27.(화) 24:00까지 | 7. 31.(수) 00:00부터 |
| 사이버(보안)수사, 법학, 세무회계 | 7. 31.(수) ~ 8. 6.(화) 24:00까지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무도경채 | 7. 31.(수) ~ 8. 9.(금) 24:00까지 | |
| 교통공학, 과학수사, 재난사고, 교향악단 | 7. 31.(수) ~ 8. 30.(금) 24:00까지 | |

※ 접수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수수료**

- 경위 7,000원, 경사 이하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 **서류제출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시험 응시불가

| 채용분야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
| 변호사·공인회계사· 무도경채 | 분야별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확인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계) | 7. 26.(금) 18:00限 |
| 교통공학·과학수사· 재난사고 | | 원서접수사이트 첨부 (사이트 내 원서접수 메뉴 클릭 후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에 첨부) | 7. 22.(월) 18:00限 |
| ▶ 위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는 「원서접수 시」 서류제출 불요 | | | |

※ 등기우편(퀵서비스 불가)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1차 시험 합격시 제출 서류(공통)

| 제출 서류명 | 양식 및 발급 장소 |
|--------------|--|
| 신원진술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에 양식 첨부 |
| 기본증명서(상세) |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인터넷발급(민원24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색), 주민센터 |
| 병적증명서 | 인터넷발급(민원24에서 '병적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병무청 |
| 개인신용정보서 | 한국신용정보원, (주)코리아크레딧뷰로, (주)나이스신용평가정보 |
| 신원확인조회서 | 가까운 경찰관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19. 4. 13.(토)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
| 응시자격(학위) 서류 | 해당자격(학위) 발급기관 |
| 가산점 자격증 | 해당자격 발급기관(홈페이지), 자격증 사본 |

※ 서류에 대해 형식상 적격성은 접수시 판단하고, 내용상 적격성은 3차 시험에서 최종 판단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 | | | | | | |
|---|--|------|---------------------|------|-----------|------|-----------------|------|----------------------------------|
| 모든 증명서 |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 | | | | | | |
|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 보험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 해야 함 ※ 경찰교향악단 분야 중 군·경찰 악대경력은 경력증명서만 제출 ▶ ①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과 함께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제출 ▶ ②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고용보험</td> <td>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td> </tr> <tr> <td>국민연금</td> <td>가입자 가입증명서</td> </tr> <tr> <td>건강보험</td> <td>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td> </tr> </table> ▶ ③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 | | | | | | |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 | | | | | | |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 | | | | | | |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 | | | | | | |
| 외국어 작성 증명서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 | | | | | | |

IV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붙임1 참조)

□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
| 변호사·공인회계사 | 경감·경위 | 만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8. 1. 1. ~ 1996. 12. 31. |
| 기타 수 분야 | 경장·순경 |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8. 1. 1. ~ 1999. 12. 31. |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기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 | |

□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전날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및 직권면직자 중 공사상으로 전역한 자 포함

□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조의2/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항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붙임 2)에 부합
-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붙임 3)에 부합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름

□ 면허 및 응시요건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 ㄱ 운전면허는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일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함
 ㄴ 변호사(경감급) 분야는 운전면허를 응시요건에서 제외함

○ 자격증 및 경력증명 기준일

| 구분 | 기준일 |
|-------------|--------------------------|
| 학위 및 자격증 | ▶ 신체·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 |
| 어학능력 자격증 | ▶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
|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 면접시험 최종일 |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요건 ※ 응시자격 부합여부는 3차 시험에서 최종판정

| 채용분야 | 응시요건 |
|-------|--|
| 변호사 | ▶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10. 11. 기준) ※ 우대 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자 ※ 법조 경력 :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등 (경찰경력 포함) |
| 공인회계사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자격증 보유 10. 11. 기준) 2.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수습(2년 또는 3년) 등을 이수한 자(실무수습 기간 산정 11. 27. 기준) |

| 교통공학 |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분야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2.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교통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교통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p>√ 관련 분야 : 교통/도로/도시 공학(철도·항만·항공, 포장공학, 물류 관련 분야는 제외)</p> <p>√ 관련 학과 :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도시·교통 직무분야 관련 학과</p> <p>√ 교통 과목 : 교통/도로 공학, 교통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경제(정책), 교통시설, 교통법규, 교통관리, 교통행정, ITS 등의 분야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교과목명만으로 교통 분야에 해당함을 유추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교통 분야에 대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함(단, 철도·항만·항공 관련 과목, 포장공학, 물류관련 과목은 제외)</p> <p>√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p> <p>√ 연구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p>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도 | <p><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도 공인기관 3단 이상 소지자 2. 국제대회 입상자 또는 국내 전국대회 우승자(대학부 이상 개인전에 한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항 목</th> <th colspan="2">인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무 도</td> <td colspan="2">·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3단 이상자</td> </tr> <tr> <td rowspan="3">입상 대회</td> <td rowspan="2">국제</td> <td>태권도 (겨루기)</td> <td>·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아시안게임</td> </tr> <tr> <td>유 도</td> <td>·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마스터즈, 그랜드슬램, 아시안게임</td> </tr> <tr> <td>검 도</td> <td>·세계선수권대회</td> </tr> <tr> <td colspan="2">국내</td> <td colspan="2">·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주관 전국대회 및 전국체육대회</td> </tr> </tbody> </table> <p>※ 무도 및 대회입상 경력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p> <p>※ 공인기관 : 태권도(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p> | 항 목 | | 인정기준 | | 무 도 |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3단 이상자 | | 입상 대회 | 국제 | 태권도 (겨루기)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아시안게임 | 유 도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마스터즈, 그랜드슬램, 아시안게임 | 검 도 | ·세계선수권대회 | 국내 |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주관 전국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 |
| | 항 목 | | 인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무 도 |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3단 이상자 | | | | | | | | | | | | | | | | | | | | |
| 입상 대회 | 국제 | 태권도 (겨루기)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아시안게임 | | | | | | | | | | | | | | | | | | | |
| | | 유 도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마스터즈, 그랜드슬램, 아시안게임 | | | | | | | | | | | | | | | | | | | |
| | 검 도 | ·세계선수권대회 | | | | | | | | | | | | | | | | | | | | |
| 국내 |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주관 전국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청장기무도·사격대회 | <p><8월 중 원서접수 시 정식으로 응시요건 공고 예정></p> | | | | | | | | | | | | | | | | | | | | | |

| 과학수사 |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2.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p>√ 관련 학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학과</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과수</td> <td>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의과학),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범죄학, 형사학</td> </tr> <tr> <td>화재안전</td> <td>안전공학, 소방방재학, 소방공학, 방재공학,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학(공학), 건축학(공학)</td> </tr> </tbody> </table> <p>※ 전공·학위·학과명에 위 열거된 관련 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p> <p>√ 관련 자격증</p> <p>「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자격증 중 화학분석기능사(기사),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 기능장), 생물공학기사, 전기기능사(기사~기능장), 가스기능사(산업기사~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산업기사, 기사) / 보건·의료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중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사, 약사</p> <p>√ 관련 분야 : 과학수사, 안전 등 위 '관련 학과'와 관련된 분야</p> <p>√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p> <p>√ 연구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p> | | 분야 | 학과 | 일반과수 |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의과학),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범죄학, 형사학 | 화재안전 | 안전공학, 소방방재학, 소방공학, 방재공학,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학(공학), 건축학(공학) |
|------|---|----|----|----|------|---|------|--|
| | 분야 | 학과 | | | | | | |
| 일반과수 | 과학수사학, 법과학, 법의학(법정의학, 법의간호학, 의학, 의과학),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범죄학, 형사학 | | | | | | | |
| 화재안전 | 안전공학, 소방방재학, 소방공학, 방재공학,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학(공학), 건축학(공학) | | | | | | | |
| 교향악단 |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2.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3.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p>√ 관련 분야 : 해당악기 전공, 실용음악 전공, 음악예술 분야 전공</p> <p>√ 관련 학위 : 학과 또는 전공명이 해당악기 또는 관련 분야 해당 시 지원 가능(他 전공 학사 학위 취득 후, 해당 악기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불인정)</p> <p>√ 근무·활동 경력 : 기관·단체 소속 연주경력(악장, 연주단원 등), 음악협회 소속 활동 경력 등 실제 음악 연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력(군·경찰 악대경력 포함, 단순 행정업무 제외)</p> | | | | | | | |

| 재난사고 | <p>▶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관련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건축</td> <td>√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td> </tr> <tr> <td>토목</td> <td>√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td> </tr> <tr> <td>기계</td> <td>√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비보전기사,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td> </tr> <tr> <td>전기</td> <td>√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td> </tr> </tbody> </table> <p>※ 관련 자격증은 기술사·기능장·기사만 인정되고, 산업기사·기능사는 불인정</p> <p>√ 관련 분야 : <건축> 건축설계, 시공, 구조, 설비, 감리 관련 <토목> 토목구조, 시공, 감리 관련 <기계> 기계설계, 안전, 설비, 정비 관련 <전기> 전기설계, 안전, 설비, 공사 관련</p> <p>√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p> <p>√ 연구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p> | 분야 | 관련 자격증 | 건축 | √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토목 | √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기계 | √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비보전기사,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 전기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
|--------------------------------|--|--------|--------|----|---|----|-------------------------------------|----|---|----|---|
| | 분야 | 관련 자격증 | | | | | | | | | |
| 건축 | √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 | | | | | | | | |
| 토목 | √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 | | | | | | | |
| 기계 | √ 기계안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비보전기사,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 | | | | | | | | | |
| 전기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 | | | | | | | | | |
| 사이버수사 사이버 보안수사 (통합선발) |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3.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p>√ 관련 자격증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p> <p>√ 관련 분야 :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학,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전기 제외)</p> <p>√ 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p> <p>√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p> <p>√ 연구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p>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 2020년 변경 예정 응시요건 】</p>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2.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p>√ 관련 자격증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p> <p>√ 관련 분야 :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학,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전기 제외)</p> <p>√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p> <p>√ 연구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p> <p>√ 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p> |
| 경찰 행정 학과 | <p>▶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불임 4)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p> <p>※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학력 인정자 포함</p> |
| 법학 | <p>▶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p> <p>√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p> <p>※ 성적증명서상 전공명 또는 학위명에 '법학' 명시(예 : 경찰법학과, 법학전공, 법학사)</p> <p>√ 관련 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p> <p>※ △관련 과목 연습·특강 포함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 인정</p> |

| | |
|------|---|
| 세무회계 | <p><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p> <p>1.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p> <p>2.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p> <p>√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 1급(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삼일회계법인), AT(FAT-TAT) 1급(한국공인회계사회)</p> <p>※ 2020년부터 FAT 1급 자격증(한국공인회계사회) 제외 예정</p> <p>√ 관련 학과 : 세무학과,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경영회계학과, 금융회계학과, 회계정보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학과명에 '세무, 회계, 경영, 경제, 금융'이 명시되면 인정)</p> <p>√ 관련 분야 : 담당 업무가 세무·회계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p> <p>√ 근무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p> <p>√ 연구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p> |
| | |

【 응시 요건 안내사항(단, 예정사항이 변경시 추후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1. 교통공학·경찰특공대·세무회계 경채 필기시험 과목 개정안(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이 2019. 7. 10.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20. 1. 1. 이후 시행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분야 | 현행 필기시험 과목 | 개선 필기시험 과목 |
|-------|---------------------------|------------------|
| 교통공학 | (구술 실기시험) | 경찰교통론, 교통공학원론 |
| 경찰특공대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 세무회계 | 세법개론, 회계학, 형법, 형사소송법 | 형법, 형사소송법 |

2. 과학수사 분야는 2020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채용 예정입니다.
3. 변호사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증과 법학전문 석사학위는 2020년부터 가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수사(통합선발) 분야는 2020년부터 응시요건 변경 예정입니다.
5. 세무회계 분야는 2020년부터 FAT 1급(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증 제외 예정입니다.
6. 학위 요건은 '주전공'과 '복수전공'만 인정되고,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관련 분야·√근무 경력·√연구 경력에서 단순 행정업무는 모두 제외됩니다.
8. 응시 요건에 대해 전화 문의 시 **응시 요건에 대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 요건 충족 여부는 **3차 시험에서 심의·결정**됩니다.

V 단계별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 시험방법

| 시험유형 | 채용분야 | 시험방법 |
|---------------------------|---|--|
| 서류전형 | 변호사 공인회계사 무도경채 | ▶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붙임 5)에 따라 평가 |
| 실기 시험 (과락: 총점의 60% 미만) | 교통공학 | ▶ 구술 실기 - 경찰교통론(30%) : 총론,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교통안전과 소통, 교통사고조사 등 - 교통공학(70%) : '교통공학원론' 등 개론서의 수록내용 전체 |
| | 과학수사 | ▶ 구술 실기 - 일반과수 : 과학수사 및 현장감식 일반, 증거수집 및 감정, 변사체 검시, 현장재구성, 상황별 지문현출기법 등 - 화재안전 : 과학수사 및 현장감식 일반, 화재현장 감식, 연소기초 및 화재조사, 증거수집 및 감정, 현장 재구성 등 |
| | 재난사고 | ▶ 구술 실기 - 공동 :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 : 건축 계획·시공·구조·설비·안전관리, 관련 법령(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토목 : 응용역학, 철근콘크리트·강구조, 토목설계·시공, 건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 기계 : 기계 일반·설계·공작법·공업, 안전관리, 관련 법령(건설기계관리법) - 전기 : 전기 이론·기기·설비·기계·공업 안전관리, 관련 법령(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 교향악단 | ▶ 연주 실기 : 1인당 5분 내외 스케일→지정곡→초견곡 順 진행 ※ 지정곡 첨부파일 참조, 심사 당일 초견곡 악보 제공 |
| | 필기 시험 (과락: 총점의 60% 미만) ※ 응시한 지방청별 시행 ★ 세부사항은 아래표 참조 | 경찰행정학과 |
| 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수사(통합선발) | ▶ 필수과목(2) :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과목(1)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디지털포렌식개론, 데이터베이스론 (10:00~11:00, 60분) | |
| 법학 | ▶ 필수과목(5)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민법총칙, 헌법 (10:00~11:40, 100분) | |
| 세무회계 | ▶ 필수과목(4) :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회계학 (10:00~11:20, 80분) | |

| | 필기시험일 | 문제 및 가답안 공개 | 문제 이의제기 | 확정답안 공개 | 성적공개 |
|---------|-----------|-----------------|------------------|-----------------|------------|
| 경찰행정학과 | 8. 31.(토) | 8. 31.(토) 12:00 | 9. 1.(일) 22:00限 | 9. 2.(월) 18:00 | 9. 20.(금)~ |
| 기타 필기분야 | 8. 10.(토) | 8. 10.(토) 12:00 | 8. 10.(토) 22:00限 | 8. 12.(월) 18:00 | 12. 19.(목) |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 △응시인원이 3배수 미만인 경우 전원 합격자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실기·필기시험) 지방청별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고득점자순 결정

| 지방청별 선발예정인원 | 6~49명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
| 합격인원 | 180% | 10명 | 9명 | 8명 | 6명 | 3명 |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시험유형 | 시험방법 | 합격자 결정 |
|------|--|---|
| 신체검사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19. 4. 13.(토) 이후 발급받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
| |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기준표'(붙임 2)와 '신체검사 세부기준'(붙임 3)에 따라 사지완전성, 사시, 문신 등 평가 | |
| 체력검사 | ▶종목 : ①100m②1,000m③약력 ④팔굽혀펴기⑤윗몸일으키기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붙임 6)에 따라 평가 ※ 응시생의 5%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붙임 7) |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결정 |
| 적성검사 |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총 450문항, 130분) |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시험 방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적격 여부를 형식·내용상 최종 판단**하여 응시자격 부합 시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 방법 : 1단계 단체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 단계 | 평가요소 | 배점 |
|----------|------------------------------|-------------|
| 1단계 단체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10점(1점~10점) |
| 2단계 개별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10점(1점~10점) |
| 가산점 |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붙임 8, 9) | 5점(0점~5점) |
| 계 | 25점 | |

- 합격자 결정 : 단계별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 시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결정

| 시험분야 | 최종 합격자 결정 |
|---------------|--|
| 변호사·공인회계사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75% 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 성적 75%, 면접시험 성적 25% 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기타 분야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 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VI 임용 사항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신입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제한됨
※ 단, 변호사 경력은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 5년간 전보 제한
- 통합선발분야(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수사)의 임용분야 결정은 채용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

| 채용분야 | 임용사항 |
|-------|--|
| 변호사 | 채용분야 필수현장보직이 총 5년으로, 최초 2년은 1급서 경제팀에서 근무하고, 2년 경과 시 1급서 수사팀장 또는 본청·지방청 직접수사부서 등에서 근무하며, 승진 시 본청·지방청 계장급 또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장으로 근무함 |
| 공인회계사 | 신입교육 수료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5년간 의무복무 |
| 무도 |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1년간 근무 후 수사형사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 교향악단 | 신입교육 수료 후 경찰대학 경찰교향악단에서 5년간 의무복무 |
| 기타 분야 |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채용분야 5년간 의무복무 |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내인 2019. 12. 29.(일)까지 요청시 반환해 드립니다.
- 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운전면허증·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자격수첩·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바. 응시요건으로 일단 사용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예 : 과학수사 석사학위 응시자의 석사학위 가산점 불인정)
-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장소에 **시험시각 정각**을 넘어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 엄수바랍니다.
- 아. 원서접수 마감은 **'19. 7. 22.(월) 18시 정각**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 없으면 원서접수 미완료)**
- 자.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 등)은 다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최소 일주일에 1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갱신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유의사항

- 가.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나. 필기시험 OMR 답안지(붙임 10)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한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표기**해야 하며, 만약 과목순서를 바꾸어 답안을 표기했을 경우 응시표 기재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 마스크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앞쪽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추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 휴대가능한 시계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 ※ 시험시작 후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나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교체 요구했을 시 여유시간이 없음과 이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인지해야 합니다.
- 아.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계속 작성했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고, 만약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체력시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나 부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기타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은 없습니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나.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G)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19. 4. 13.(토)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아닌 개인의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유의사항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3명 이하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채용분야 지방청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 **채용 계급이 경위 이하인 채용 분야만 해당됩니다.**
- 라.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만 인정됩니다.
※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 가점은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아.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점 유의사항

- 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가산점은 최고 5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나.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한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요건에 관한 문의 시 응시 요건에 대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 요건 충족 여부는 3차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됩니다.

붙임 1 경찰공무원 응시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다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 (色神) | 색신 이상(異常)이 아니어야 한다. 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 이상(異常)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사시 (斜視)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붙임 3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 평가 항목 | 내 용 |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
|------------|--------------------|--|
| 사지의 완전성 | 팔다리와 손·발가락의 완전성 |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내반슬 (오다리) | 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벌어지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붙임 4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 2호(별표1의2)

| 인 정 과 목 |
|---|
|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

□ 유사과목 인정기준

- 전국 4년제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교과과정 중 전공·기초과목 모두 인정(전공·기초필수, 전공·기초선택)
- 편입생의 경우 前籍대학 이수 전공과목 중 동임용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과목에 한해 인정

붙임 5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 채용 분야 |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 | |
|-------|-------------|--|-------|
| | 구분 | 내용 | 비율(%) |
| 변호사 | 직무경력 | ▶ 24개월을 초과하는 근무개월수×0.833 ※ 경력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 총 35개월 9.1점 총 36개월 9.9점 총 37개월 이상 10점 | 10 |
| | 졸업성적 | ▶ 졸업평균성적×50÷4.3 ※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수원 졸업성적, 로스쿨 출신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적 | 40 |
| | 역량평가 | ▶ 자기소개서(50%), 직무수행계획서(50%) | 50 |

| 구분 | 내용 | 비율(%) |
|------|--|-------|
| 직무경력 | ▶ 24개월을 초과하는 근무개월수×0.833 ※ 경력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 총 59개월 29.1점 총 60개월 29.9점 총 61개월 이상 30점 | 30 |
| 역량평가 | ▶ 자기소개서(50%), 직무수행계획서(50%) | 70 |

| 구분 | 내용 | 비율(%) |
|------|--|-------|
| 기본지식 | ▶ 경찰교통론 이해도 전반 ▶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 교통경찰활동(교통안전·소통, 사고조사 등) | 30 |
| 전문지식 | ▶ 교통공학원론 이해도 전반 ▶ 교통공학기초, 교통설계, 교통운영 및 관리 ▶ 교통계획, 교통안전, 교통사고조사 등 | 40 |
| | ▶ 응용 및 실무능력 전반 ▶ 사례해결 등 이론 적용능력 ▶ 최근 교통경찰정책 이해 및 개선안 | 30 |

| 구분 | 태권도 | 유도 | 검도 | 배점 |
|----|------------------|------------------------|-------------|-----|
| 국제 | ▶ 올림픽 금 | ▶ 올림픽 금 | ▶ 세계선수권 금 | 10점 |
| | ▶ 올림픽 은·동 | ▶ 올림픽 은·동 | ▶ 세계선수권 은 | 7점 |
| | ▶ 세계선수권·그랑프리 금 | ▶ 세계선수권·마스터즈·그랜드슬램 금 | ▶ 세계선수권 은 | 5점 |
| | ▶ 세계선수권·그랑프리 은·동 | ▶ 세계선수권·마스터즈·그랜드슬램 은·동 | ▶ 세계선수권 동 | 3점 |
| 국내 | ▶ 아시안게임 금 | ▶ 아시안게임 은·동 | ▶ 아시안게임 은·동 | 3점 |
| | ▶ 아시안게임 은·동 | ▶ 아시안게임 은·동 | ▶ 전국대회 우승 | 1점 |

※ 동점자는 ①대학부 이상 개인전 입상횟수로 순위 결정, ②입상횟수도 같은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 처리

| 구분 | 태권도 | 유도 | 검도 | 배점 |
|-----|-----------------------------|---------------------------------|-----------------------------------|----|
| 발차기 | ▶ <옆뒤차기, 뒤후려차기, 연결차기, 표적차기> | ▶ 기본동작(낙법) <전방·후방, 전방회전낙법(좌·우)> | ▶ 연결 <거리, 기합, 정확성, 기검체일치> | 40 |
| | ▶ <고려, 태백> | ▶ 굳히기 <누르기, 조르기, 꺾기> | ▶ 경기운영능력(대련) <기세, 기회, 유효타격(타격력)> | 30 |
| 겨루기 | ▶ <공격력, 방어력, 겨루기 운영 능력> | ▶ 메치기 <손기술발기술허리기술> | ▶ 기초체력 <공격·상호 공격연습, 빠른 머리치기 500회> | 30 |
| | | ▶ 연결기술 <손기술발기술허리기술> | | 30 |

| 채용 분야 |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 | | | |
|---------------|---------------------------|---|-----|-----|----|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성적으로 같음 | | | | |
| | 종 목 | 합격자 결정 방법 | | | |
| | 태권도·유도·레슬링 복싱·사격 | ▶ 각 체급(종목)별 우승자에게 실기점수 만점 부여 ▶ 2위 이하는 실기시험 과락 처리 | | | |
| 검 도 | ▶ 단일 체급으로, 4강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 | | | |
| |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 배점 | 75점 | 65점 | 55점 | 45점 | |

※ 사격 : 일반부·대학부 별도 운영하되, 종목별 일반부 1위, 대학부 1위 중결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합격자로 선정(각 부 1위가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 구분 | 내용 | 비율(%) |
|--------|---|-------|
| 직무수행계획 | ▶ 과학수사 또는 전공분야 연구, 논문게재(KCSI 등 재학술지에 논문게재시 평가우대), 학위 과정 외 과학수사 관련 교육실적 및 기타 과학수사 관련 실적, 경력, 발전방안 등 제출 | 20 |
| 기본지식 | ▶ 과학수사 직무 일반 지식, 현장감식 일반 | 30 |
| 전문지식 | <일반과수> ▶ 지문, 족적, 미세증거 등 현장증거 / 현장 재구성 ▶ 현장감식·검시 등 현장분석 | 50 |
| | <화재안전> ▶ 화재감식 관련 전공분야 연관지식, 화재감식 이해 ▶ 방화·실화 구분 등 | |

| 구분 | 내용 | 비율(%) |
|------------|---|-------|
| 기본지식 | ▶ 음정이해, 음색 등 ▶ 정확한 연주법, 스케일 등 | 15 |
| 지정곡 | ▶ 연주능력, 기교, 연주법 등 ▶ 해당곡 표현력, 해석력 등 ▶ 작곡가 의도 표현력 등 | 40 |
| 초견곡 | ▶ 정확한 악보 연주법, 표현력 등 ▶ 연주능력, 기교, 연주법 등 | 30 |
| 평가자요구 해결능력 | ▶ 연주 대처 능력, 합주 대처 능력 등 ▶ 음악이론, 앙상블 등 연주능력 | 15 |

| 구분 | 내용 | 비율(%) |
|------|--|-------|
| 기본지식 |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 10 |
| | ▶ 산업안전관리일반 -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 | 20 |
| 전문지식 | ▶ 건축 일반 - 건축시공, 건축구조 등 | 15 |
| |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강구조 - 구조설계, 구조제안, 접합부 설계 등 | 15 |
| | ▶ 건축 관계 법규 이해 -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 20 |
| | ▶ 건설 안전 관리 일반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등 | 20 |

| 채용 분야 | |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 | |
|-------|--|--|------------------|----|
| 토목 | 구분 | 내용 | 비율(%) | |
| | 기본지식 |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 10 |
| | | 산업안전관리일반 -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 | 20 | |
| 전문지식 | | 건축 일반 - 건축시공, 건축구조 등 | 15 | |
| |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강구조 - 구조설계, 구조제한, 접합부 설계 등 | 15 | |
| | | 건축 관계 법규 이해 -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 20 | |
| | | 건설 안전 관리 일반 - 건설안전기술,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등 | 20 | |
| 기계 | 구분 | 내용 | 비율(%) | |
| | 기본지식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 10 | |
| | | 산업안전관리일반 -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 | 20 | |
| 전문지식 | | 기계 일반 - 기계 재료·요소, 공유압 등 전반 | 15 | |
| | | 기계 설계 - 체결용 기계요소, 축계요소 등 설계 전반 | 15 | |
| | | 기계 공작법 - 기계가공, 주조, 용접, 특수가공 등 전반 | 15 | |
| | | 기계 관계 법규 이해 - 건설기계관리법 등 | 5 | |
| | 기계 공업 안전 관리 일반 - 기계 위험 방지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20 | | |
| 전기 | 구분 | 내용 | 비율(%) | |
| | 기본지식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 10 | |
| | | 산업안전관리일반 -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 | 20 | |
| 전문지식 | | 전기이론 일반 - 정전기와 자기, 직류·교류 회로 등 | 15 | |
| | | 전기기기 일반 - 직류기, 변압기, 유도전동기, 동기기 등 | 15 | |
| | | 전기설비 설계 일반 - 전기설비설계 이론, 전기설비기술 기준 등 | 15 | |
| | | 전기 관계 법규 이해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 5 | |
| | 전기 공업 안전 관리 일반 - 전기 위험 방지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20 | | |

붙임 6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 구분 |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남자 | 100m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 13.5 | 13.6 ~ 14.0 | 14.1 ~ 14.5 | 14.6 ~ 15.0 | 15.1 ~ 15.5 | 15.6 ~ 16.0 | 16.1 ~ 16.5 | 16.6 ~ 16.9 | 17.0 이후 |
| | 1,000m 달리기 (초) | 230 이내 | 231 ~ 236 | 237 ~ 242 | 243 ~ 248 | 249 ~ 254 | 255 ~ 260 | 261 ~ 266 | 267 ~ 272 | 273 ~ 279 | 280 이후 |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 ~ 55 | 54 ~ 51 | 50 ~ 46 | 45 ~ 40 | 39 ~ 36 | 35 ~ 31 | 30 ~ 25 | 24 ~ 22 | 21 이하 |
| | 좌우 악력 (kg) | 61 이상 | 60 ~ 59 | 58 ~ 56 | 55 ~ 54 | 53 ~ 51 | 50 ~ 48 | 47 ~ 45 | 44 ~ 42 | 41 ~ 38 | 37 이하 |
| 여자 | 팔굽혀펴기 (회/1분) | 58 이상 | 57 ~ 52 | 51 ~ 46 | 45 ~ 40 | 39 ~ 34 | 33 ~ 28 | 27 ~ 23 | 22 ~ 18 | 17 ~ 13 | 12 이하 |
| | 100m 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 16.3 | 16.4 ~ 17.1 | 17.2 ~ 17.9 | 18.0 ~ 18.7 | 18.8 ~ 19.4 | 19.5 ~ 20.1 | 20.2 ~ 20.8 | 20.9 ~ 21.5 | 21.6 이후 |
| | 1,000m 달리기 (초) | 290 이내 | 291 ~ 297 | 298 ~ 304 | 305 ~ 311 | 312 ~ 318 | 319 ~ 325 | 326 ~ 332 | 333 ~ 339 | 340 ~ 347 | 348 이후 |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 ~ 50 | 49 ~ 45 | 44 ~ 40 | 39 ~ 35 | 34 ~ 30 | 29 ~ 25 | 24 ~ 19 | 18 ~ 13 | 12 이하 |
| 자 | 좌우악력 (kg) | 40 이상 | 39 ~ 38 | 37 ~ 36 | 35 ~ 34 | 33 ~ 31 | 30 ~ 29 | 28 ~ 27 | 26 ~ 25 | 24 ~ 22 | 21 이하 |
| | 팔굽혀펴기 (회/1분) | 50 이상 | 49 ~ 45 | 44 ~ 40 | 39 ~ 35 | 34 ~ 30 | 29 ~ 26 | 25 ~ 21 | 20 ~ 16 | 15 ~ 11 | 10 이하 |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총점의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붙임 7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I.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
|---|
| <p>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p> <p>▶drostanolone ▶methenolone</p> <p>▶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p> <p>▶stanozolol</p> <p>▶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p> <p>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p> <p>▶testosterone</p> |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
|--|

3. 흥분제 : 총 3종

| | |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ephedrine |
| ▶methylephedrine |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 | | |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 |

II.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8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6

| 분 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 |
|------------|---|--|---|---|
| | 5점 | 4점 | 2점 | |
| 학 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 |
|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 |
| 전자·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
| 외 국 어 | 영 어 |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
| | | 일 어 | -JLPT 1급(N1) -JPT 850 이상 | -JLPT 2급(N2) -JPT 650 이상 |
| | 중국어 | -HSK 9급이상(新 HSK 6급) |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
| 노 동 | -공인노무사 | | | |
| 무 도 | | -무도 4단 이상 | -무도 2·3단 | |
| 부 동 산 | -감정평가사 | | 공인중개사 | |
| 교 육 | -청소년상담사1급 |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 |
| 재 난 · 안전관리 |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해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조종면허(기중기, 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해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 | |

| 분 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
|------|--|---|--|
| | 5점 | 4점 | 2점 |
| 화 약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교 통 |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산업기사 |
| 토 목 |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 법 무 | -변호사 | -법무사 |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
| 의 료 | -의사 -상담심리사1급 |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
| 특 허 | -변리사 | | |
| 건 축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 시공산업기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전기공사기사 |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 산업기사 |
|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함.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신체·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함.

※ '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워드프로세스 1급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붙임 9 |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7개)**

| | | |
|------------------|-------|--------|
| 대한태권도협회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 대한카라테연맹(대한공수도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우슈협회 |
| 대한복싱협회 | | |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7개)**

| | | |
|--------------|------------------------------|--------------------------|
| 대한기도회 | 재남무술원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 대한합기도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한국합기도연맹) |
| 대한합기도총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KOREA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 대한합기도연맹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용무도협회 |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대한해동검도협회 | 세계태권도무도연맹 |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검도연합회 |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세계합기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 한국무예진흥원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ITF태권도협회 | |

응시자 준수사항

□ 답안지 작성요령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번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특정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번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X ● ○ ◎ ○ ◎

2.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도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점수산출은 OMR판독 결과에 따라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를 받는 즉시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한 후 해당분야에 정확히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로 표기하고, 인클성명을 정자로 기입합니다.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배정원이 본인인 직접 작성(표기) 해야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1매만 유효합니다.
(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됨)

4. 필적 검증용 기재
(예시)와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 편철이 과목소리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은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소리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소리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소리로 채점되며 점수산출은 무효화시킵니다.

7. 답안은 배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소수에 "●"로 표기해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표기한 부분을 루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답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합니다.

- 답안지의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부정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의2에 의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에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분야 코드번호】

| 분 야 | 번호 |
|--------|----|
| 일반공직 | 01 |
| 일반여직 | 02 |
| 전문경력직 | 03 |
| 101단 | 04 |
| 경찰행정학과 | 05 |
| 법학 | 06 |
| 세무회계 | 07 |
| 사이버수사 | 81 |
| 디지털포렌식 | 82 |
| 해킹 | 91 |
| 포렌식 | 92 |
| 약성검독 | 93 |
| 네트워킹 | 94 |

【응시지구(시·도) 코드번호】

| 응시지구 | 번호 | 응시지구 | 번호 |
|-------|----|-------|----|
| 경찰청 | 01 | 경기북부청 | 10 |
| 시울청 | 02 | 경원청 | 11 |
| 부산청 | 03 | 충북청 | 12 |
| 대구청 | 04 | 충남청 | 13 |
| 인천청 | 05 | 전북청 | 14 |
| 광주청 | 06 | 전남청 | 15 |
| 대전청 | 07 | 경북청 | 16 |
| 울산청 | 08 | 경남청 | 17 |
| 경기도부청 | 09 | 제주청 | 18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 분야 | 시도 | 응시번호 | 생년월일 (사실상세월일 표기) |
|-----|-----|----------|---------------------|
| 0/0 | 0/0 | 00000000 | 0000000000 |
| 1/1 | 1/1 | 11111111 | 1111111111 |
| 2/2 | 2/2 | 22222222 | 2222222222 |
| 3/3 | 3/3 | 33333333 | 3333333333 |
| 4/4 | 4/4 | 44444444 | 4444444444 |
| 5/5 | 5/5 | 55555555 | 5555555555 |
| 6/6 | 6/6 | 66666666 | 6666666666 |
| 7/7 | 7/7 | 77777777 | 7777777777 |
| 8/8 | 8/8 | 88888888 | 8888888888 |
| 9/9 | 9/9 | 99999999 | 9999999999 |

| 인클성명 | 필적 검증용 기재란 |
|------|------------------|
| | (예시) 위 응시지와 동일함. |

| 검 인 | 감독관 인 |
|-----|----------|
| | |

답안지를 받는 즉시, 시험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과목을 순서대로 기입

| 제 1 과목) | | 제 2 과목) | | 제 3 과목) | | 제 4 과목) | | 제 5 과목) | |
|----------|---------|----------|---------|----------|---------|----------|---------|----------|---------|
| 답변 | 1 2 3 4 | 답변 | 1 2 3 4 | 답변 | 1 2 3 4 | 답변 | 1 2 3 4 | 답변 | 1 2 3 4 |
| 1 | 1 2 3 4 | 1 | 1 2 3 4 | 1 | 1 2 3 4 | 1 | 1 2 3 4 | 1 | 1 2 3 4 |
| 2 | 1 2 3 4 | 2 | 1 2 3 4 | 2 | 1 2 3 4 | 2 | 1 2 3 4 | 2 | 1 2 3 4 |
| 3 | 1 2 3 4 | 3 | 1 2 3 4 | 3 | 1 2 3 4 | 3 | 1 2 3 4 | 3 | 1 2 3 4 |
| 4 | 1 2 3 4 | 4 | 1 2 3 4 | 4 | 1 2 3 4 | 4 | 1 2 3 4 | 4 | 1 2 3 4 |
| 5 | 1 2 3 4 | 5 | 1 2 3 4 | 5 | 1 2 3 4 | 5 | 1 2 3 4 | 5 | 1 2 3 4 |
| 6 | 1 2 3 4 | 6 | 1 2 3 4 | 6 | 1 2 3 4 | 6 | 1 2 3 4 | 6 | 1 2 3 4 |
| 7 | 1 2 3 4 | 7 | 1 2 3 4 | 7 | 1 2 3 4 | 7 | 1 2 3 4 | 7 | 1 2 3 4 |
| 8 | 1 2 3 4 | 8 | 1 2 3 4 | 8 | 1 2 3 4 | 8 | 1 2 3 4 | 8 | 1 2 3 4 |
| 9 | 1 2 3 4 | 9 | 1 2 3 4 | 9 | 1 2 3 4 | 9 | 1 2 3 4 | 9 | 1 2 3 4 |
| 10 | 1 2 3 4 | 10 | 1 2 3 4 | 10 | 1 2 3 4 | 10 | 1 2 3 4 | 10 | 1 2 3 4 |
| 11 | 1 2 3 4 | 11 | 1 2 3 4 | 11 | 1 2 3 4 | 11 | 1 2 3 4 | 11 | 1 2 3 4 |
| 12 | 1 2 3 4 | 12 | 1 2 3 4 | 12 | 1 2 3 4 | 12 | 1 2 3 4 | 12 | 1 2 3 4 |
| 13 | 1 2 3 4 | 13 | 1 2 3 4 | 13 | 1 2 3 4 | 13 | 1 2 3 4 | 13 | 1 2 3 4 |
| 14 | 1 2 3 4 | 14 | 1 2 3 4 | 14 | 1 2 3 4 | 14 | 1 2 3 4 | 14 | 1 2 3 4 |
| 15 | 1 2 3 4 | 15 | 1 2 3 4 | 15 | 1 2 3 4 | 15 | 1 2 3 4 | 15 | 1 2 3 4 |
| 16 | 1 2 3 4 | 16 | 1 2 3 4 | 16 | 1 2 3 4 | 16 | 1 2 3 4 | 16 | 1 2 3 4 |
| 17 | 1 2 3 4 | 17 | 1 2 3 4 | 17 | 1 2 3 4 | 17 | 1 2 3 4 | 17 | 1 2 3 4 |
| 18 | 1 2 3 4 | 18 | 1 2 3 4 | 18 | 1 2 3 4 | 18 | 1 2 3 4 | 18 | 1 2 3 4 |
| 19 | 1 2 3 4 | 19 | 1 2 3 4 | 19 | 1 2 3 4 | 19 | 1 2 3 4 | 19 | 1 2 3 4 |
| 20 | 1 2 3 4 | 20 | 1 2 3 4 | 20 | 1 2 3 4 | 20 | 1 2 3 4 | 20 | 1 2 3 4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